

교습비등 게시·표시

2025년 05월 26일 현재

학원(교습소)명	러셀센텀학원 (등록번호 제 3271 호)				
위 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 2로 29, 11층				
설립·운영자	메가스터디교육(주)	전화번호	051-715-1010		
교습과목	수강반 (수강대상)	금액			
		총교습시간 (분/월)	교습비	계	비고
		1,113	225,000		
		2,184	450,000		
34고등 국어/영어/수학/사탐/과탐		1,860	375,000		
37고등 국어/영어/수학/사탐/과탐		740	150,000		
		1,386	300,000		
		1,470	320,000		
		1,400	320,000		
		328	75,000		
		2,712	600,000		
		350	80,000		
		2,800	640,000		
86단과		1214	300,000		
87단과	보습단과	1294	320,000		
89단과		1296	320,000		
92단과		303	75,000		
93단과		2424	600,000		
94단과		323	80,000		
95단과		2584	640,000		
국어-1,수학-1,영어-1,사회탐구-1,과학탐구-1		646	160,000		
국어-2,수학-2,영어-2,사회탐구-2,과학탐구-2		969	240,000		
국어-3,수학-3,영어-3,사회탐구-3,과학탐구-3		1615	400,000		
국어-4,수학-4,영어-4,사회탐구-4,과학탐구-4		1938	480,000		
국어-5,수학-5,영어-5,사회탐구-5,과학탐구-5		2261	560,000		
국어-6,수학-6,영어-6,사회탐구-6,과학탐구-6		2907	720,000		
국어-7,수학-7,영어-2,사회탐구-7,과학탐구-7		3230	800,000		

교습비등 게시·표시

2025년 05월 26일 현재

학원(교습소)명	러셀센텀학원 (등록번호 제 3271 호)					
위 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 2로 29, 11층					
설 립 · 운 영 자	메가스터디교육(주)	전화번호	051-715-1010			
교습 과목	수강반 (수강대상)	금액				
		총교습시간 (분/월)	교습비	계	비고	
57입시논술	인문 · 수리 논술	291	85,000			
16입시논술		1,554	450,000			
97논술		949	300,000			
98논술		1075.2	340,000			
100논술		237	75,000			
101논술		269	85,000			
수리논술-1,인문논술-1		474	150,000			
수리논술-2,인문논술-2		711	225,000			
수리논술-3,인문논술-3		1185	375,000			
수리논술-4,인문논술-4		538	170,000			
수리논술-5,,인문논술-5		807	255,000			
수리논술-6,인문논술-6		1345	425,000			
103진학지도		진학 상담지도	1071	460,000		
112진학지도			1072	460,000		
113진학지도	36		15,334			
107진학지도2	35		14,839			
108진학지도3	1071		460,000			
130진학지도	37		16,000			
131진학지도	36		15,484			
132진학지도	1113		480,000			
133진학지도	1109		480,000			
진학지도A	821		350,000			
진학지도B	347		150,000			
진학지도C	703		300,000			
진학지도D	234		100,000			

교습비등 게시·표시

2025년 05월 26일 현재

학원(교습소)명		리셀센텀학원 (등록번호 제 3271 호)									
위 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 2로 29, 11층									
설 립 · 운 영 자		메가스터디교육(주)			전화번호			051-715-1010			
교습 과목	수강반 (수강대상)	총교습시간 (분/월)	교습비	기타경비						계	비고
				모의고사비	재료비	파복비	급식비	가습기비	차량비		
고등보습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10,000							
				11,000							
				12,000							
				13,000							
				15,000							
				16,000							
				17,000							
				18,000							
			19,000								
			20,000								
			23,000								
			25,000								
			28,000								
			46,00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 교습비등 반환기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